

2025년도 「한-일 인력교류사업」 신규과제 공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연구자 간 국제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 「한-일 인력 교류사업」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5월 9일

<주무부처>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상 임
<전문기관>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

1. 사업목적

- 한국과 일본 양국 연구자 간 기술 분야별 인력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, 국내 연구자의 국제 연구 협력기반 마련

2. 지원분야

- ① 인공지능(AI) ② BT ③ Energy ④ 양자(Quantum)
- ⑤ 반도체 ⑥ ICT

3. 사업 및 지원내용

- 지원형태 : 인력교류(Mobility)
- 선정규모 : 총 12개 과제 내외
※ 지원과제 수를 고려하여 분야별 선정 과제 조정 가능
- 지원규모 : 과제별 20백만원 내외
※ 간접비 :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의거 5% 적용

지원기간 : 1년(12개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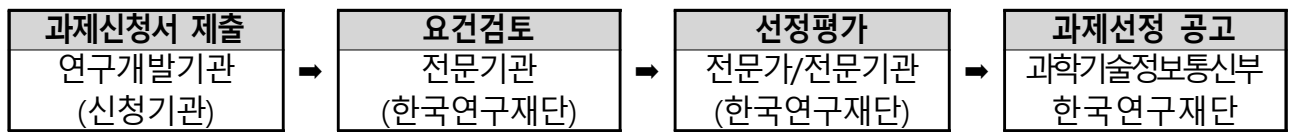
사업개시 : 2025년 8월 이후

지원내용 : 한-일 연구자 간 인력교류 경비(연구자 네트워크 활동, 세미나 개최 등)

※ 단, 한국측 연구비는 한국측에서 선정된 연구자에게만 지원

4.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항목(안)

평가절차



평가 항목(안)

- 인력교류(활동)의 필요성 및 구체성
- 인력교류(활동)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,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
-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능력
-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
-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

※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

5. 신청자격 및 참여 제한

연구개발기관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혁신법 제2조(정의) 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- 연구책임자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이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및 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

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 2.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 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-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※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**상한제도(3책5공)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임(3책 5공 참여제한 예외)**
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시행령」 등 제규정에 의거,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는 신청할 수 없음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 확인 요망 (※<http://www.ntis.go.kr> 로그인 후 확인)

-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에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

- 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차별성이 인정*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

* NTIS를 통해 연구목표,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여부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차별성 여부 최종 결정

- 본 사업 내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

6.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□ 신청기간

구 분	내 용
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기관 검토·승인 기간	2025.5.9.(금) ~ 2025.6.10.(화) 18:00까지
신청 절차	연구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※ 주관기관 승인 필수 : 2025.6.10.(화) 18:00 까지 완료되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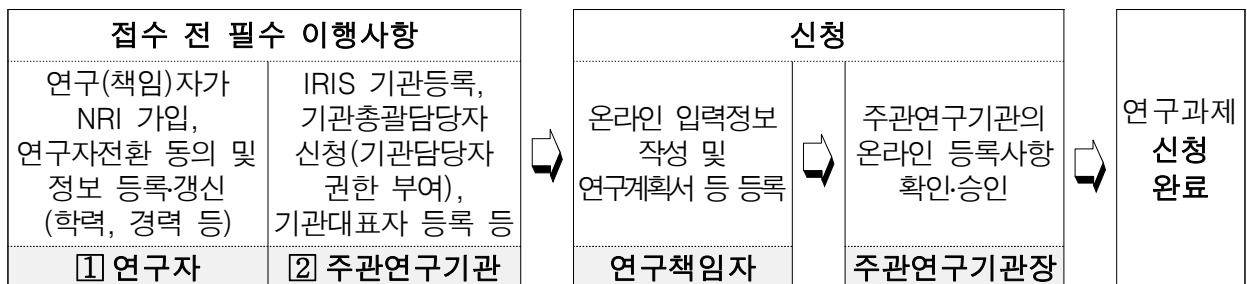
- 연구책임자 : [연구책임자 신청 기간] 내에 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[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(단,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함)
- 기한 내에 신청완료 및 주관기관 승인이 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,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(유효성 검증 오류 등)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 권장(평일 기준)

□ 접수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 진행

○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 로그인 → R&D 업무포탈 클릭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탈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작 전에 기관 대표자/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**과제 신청 완료** 가능.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 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주관연구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 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-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, 화면 우측 상단의 ‘최종확인’ 완료 이후 ‘제출’ 이 가능함.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

○ 제출서류

제출서류	제출필수여부	비고
연구개발계획서 PART1(표지)	웹입력	
연구개발계획서 PART2(본문1)	필수	[붙임1] 국문 연구개발계획서양식
연구개발계획서 PART3(본문2)	웹입력	
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	필수	[붙임2]

※ 추후 제출서류의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문의처

□ 문의 절차

※ 문의가 필요한 경우: E-mail 문의 후 해결이 안 될 경우 → 유선문의

※ E-mail 문의 시, 하단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 문의

- ▶ 지원하는 사업명: 2025년도 한-일본 인력교류사업
- ▶ 소속/연구자성명/유선연락처
ex) 한국연구재단 / 김늘프 교수 / 010-1234-5678
- ▶ 문의내용



□ 관련 법령, 규칙, 매뉴얼 등 조회 방법

-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gaia.go.kr>) 접속
 - 법·규정·규칙 : 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 → '공통 법·규정' → '과학기술정보통신부', '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연구재단)' 관련 확인
 - 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 : 「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」 클릭

□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-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 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(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)
- 한국연구재단 (<https://www.nrf.re.kr>)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사업공지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<https://www.iris.go.kr>)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지 → 사업공고

□ 문의처

-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1877-2041
- 사업관련 문의: 한국연구재단 미주아시아협력팀
 - 이수현 연구원 ☎ 02) 3460-5702 / E-mail : lsh1011@nrf.re.kr
 - 조민정 연구원 ☎ 02) 3460-5704 / E-mail : mjjo@nrf.re.kr